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23
----------	-------

발의연월일 : 2022. 9. 20.

발의자 : 박재호 · 김정호 · 이상현
윤관석 · 최인호 · 민병덕
서동용 · 이용우 · 장철민
김병기 · 송재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두어,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매입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해당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동 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범 운용되던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에 법제화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당초 시범 운용 시에 포함되었던 중견기업은 팩토링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견기업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등).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3 중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한다.

제23조의5의 제목 중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 등”이라 한다)”로, “중소기업자가”를 “중소기업자등이”로, “중소기업자에게”를 “중소기업자등에게”로,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팩토링”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업무) ① ----- ----- -----.
1. ~ 2의2. (생 략)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u>중소기업팩토링</u> 운용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 <u>중소 · 중견기업팩토링</u> -----
3. ~ 7. (생 략) ②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5(<u>중소기업팩토링</u> 운용) ①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u>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u> 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u>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u>중소기업자에게</u>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u>중소기업팩토링</u>”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u>	제23조의5(<u>중소 · 중견기업팩토링</u> 운용) ① ----- ----- ----- <u>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 등”이라 한다)----- ----- <u>중소기업자등이----- ----- ----- <u>중소기업자등에게----- -----</u></u></u>

하게 할 수 있다.	----- ----- <u>중소·중견기업팩토링</u> ----- -----.
② 그 밖에 <u>중소기업팩토링</u> 운 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② ----- <u>중소·중견기업팩토</u> <u>링</u> ----- -----. -----.